| | |
|---|---|
| 의안번호 | 2207611 |
| 의 뢰 인 | 김성원의원 |
| 회 답 일 | 2025. 2. 6. |
| 추계번호 | 25D0562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Ⅰ. 비용추계 결과

❑ 4개 국가보훈관계법 개정안[1)]에 따라 '고용 우수 기업 및 단체 등의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6,100만원씩 총 3억 5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연평균 |
|---|---|---|---|---|---|---|---|
| 국가보훈대상자 고용우수기업 등 지정 (안 제7조의9제3항) | 61 | 61 | 61 | 61 | 61 | 305 | 61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Ⅱ.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7조의9제3항 (취업지원) |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 우수 기업 및 단체 등의 지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재량규정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4개 국가보훈관계법 개정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의안번호 제2207609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의안번호 제2207610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제2207606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제2207611호)

##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연번 | 조·항(조제목) | 추계여부 |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
|---|---|---|---|
| 1 | 안 제7조의9제3항 (취업지원) | O | -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4개 보훈관계법 개정안에 따른 '고용 우수 기업 및 단체 등의 지정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함

○ 대상: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이하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에 대한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체 및 단체

❑ 본 추계에서 '고용 우수 기업 및 단체 등의 지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인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등의 인증제도'를 참고하여 추계함

○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등의 인증제도'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법적 근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2](2021. 6. 8. 신설)

---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기업등은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기업등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기준·절차, 유효기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고용우수기업 등에 대한 인증패 제작비용 등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를 고려하여,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대비 6백만원 증액함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고용 우수 기업 및 단체 등의 지정 제도'를 신규 도입·운영하는 경우, 심사비용·인증패 및 부상품 제작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보훈부가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등의 인증제도'는 다음과 같음

[표 2]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등의 인증제도 사업개요

| |
|---|
| · 인증주체: 국가보훈부장관 |
| · 인증대상: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 중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원을 5명 이상으로 유지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 |
| · 유효기간: 3년(인증 만료업체는 재심의를 통해 인증서 갱신 가능) |
| · 예산(2025년 기준): 55백만원 |
| –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용역비: 50백만원 |
| – 심사위원 수당, 인증패 및 부상품 제작비, 대관료 등: 5백만원 |

❑ 개정안에 따라 '고용 우수 기업 및 단체 등의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연평균 6,1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보훈대상자 고용우수기업 등에 대한 인증패 제작비용 등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보훈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대비 6백만원 증액함

[표 3] 제대군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 비교

| | 제대군인 | 국가보훈대상자 |
|---|---|---|
| 인증 제도 | · 목적: 제대군인 취업지원 확대<br>· 인증주체: 국가보훈부장관<br>· 인증대상: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br>· **소요예산: 55백만원**<br>– 용역비: 50백만원<br>– 인증패 등: 5백만원 | · 목적: 의무고용제도 실효성 제고<br>· 지정주체: 국가보훈부장관<br>· 지정대상: 국가보훈대상자 고용우수기업<br>· **수요예산: 61백만원**<br>– 용역비: 50백만원<br>– 인증패 등: 11백만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4개 국가보훈관계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고용우수기업 등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6,100만원씩 총 3억 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연평균 |
|---|---|---|---|---|---|---|---|
| 국가보훈대상자 고용우수기업 등 지정 (안 제7조의9제3항) | 61 | 61 | 61 | 61 | 61 | 305 | 61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Ⅳ. 부대의견

❑ 없음

# Ⅴ. 작성자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행정비용추계과 | 장삼열 | 김안나 |

❑ 대표연락처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 장삼열 | 02-6788-4861 | jsy@na.go.kr |